

2019년 제1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

일시: 2019. 5. 8.(수), 14:30~

장소: 영상회의실

총 6건 (보고2, 원안 수용3, 조건부 수용1)

아건 번호	안 건 명	주요내용 및 개최결과	비 고
1	<도시균형계획과> 도시관리계획(송의역 주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- 2018년 제6회 위원회 조건부 수용 이행사항 보고	○ 위치: 미추홀구 송의동 362-19번지 일원 ○ 주요내용 - (조건부 수용) 도서관(1-3획지) 위치 변경 - (권고사항) 하류부분 하수박스 증설, 건폐율 등 밀도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, 원활한 교통흐름 위해 교통처리계획 검토	<보고> 지구단위계획팀
2	<도시균형계획과> 도시관리계획(문학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- 2018년 제6회 위원회 조건부 수용 이행사항 보고	○ 위치: 미추홀구 문학동 328-1번지 일원 ○ 주요내용 - (조건부 수용) 아파트용지를 당초대로 운동장으로 존치, 향후 활용방안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	<보고> 지구단위계획팀
3	<도시균형계획과> 도시관리계획(용현·학익 2-1블록 도시 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	○ 위치: 미추홀구 용현동 664번지 일원 ○ 주요내용 - 지구단위계획 변경: 구역명(용현·학익 2-1블록 도시개발) - 용도지구 신설: 복합용도지구 신설(7,617.5㎡) -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변경: 공공시설 18,833.1㎡ → 11,215.6㎡(감7,617.5㎡) -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: 기반시설용지(18,833.1㎡) → 기반시설용지(11,215.6㎡), 복합시설용지(7,617.5㎡) - 기타: 확정측량 지번 반영, 가구번호 및 가구면적 재부여 ※ 원안 수용	<심의> 지구단위계획팀
4	<도시균형계획과> 도시관리계획(구월업무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	○ 위치: 남동구 구월동 1336-3번지 일원 ○ 주요내용 -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 결정(변경) · 도로: 광로2-15호선 등 7개 노선 변경 및 신설 · 광장: 일반광장 9,385㎡→10,025㎡(증640㎡) 교통광장(신설) 8,891㎡ ※ 원안 수용 ※ 권고 사항 - 디자인 등 경관계획 전문가 자문 - 청사내부 민원인 통행도로와 직원통행도로 연결을 위하여 비상 차로를 상시 차로로 변경 검토 - 지하주차장 설치 검토 등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열린광장 자문회의 시 안건으로 논의하기 바람.	<심의> 지구단위계획팀

아건번호	안건명	주요내용 및 개최결과	비고
5	<p><도시균형계획과> 도시관리계획(석남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</p>	<p>○ 위치: 서구 석남동 224-20번지 일원</p> <p>○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토지이용) 공업용지 50,159㎡→54,324㎡(증 4,165㎡) - (기반시설) 도로(중로) 1개 노선→폐지, 완화차로 설치(광3-9 외1) - (가구·획지계획) 2개 가구, 27개 필지 → 1개 가구, 1개 필지 - (건축물 등 계획) 높이 8층 이하 → 80m이하(8층 이하) - (기타사항) 공공보행통로 삭제,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정 <p>※ 조건부 수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광로 3-9호선과 대로 1-11호선의 가로변 건축한계선을 2m에서 6m 이상으로 변경하고, - 건축물 동측(신석체육공원) 등 벽면을 친환경적 색채와 형태, 재료 등으로 경관적 저감 방안을 수립 	<p><심의> 지구단위계획팀</p>
6	<p><도시개발계획과> 도시관리계획(마전지구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</p>	<p>○ 위치: 서구 마전동 일원</p> <p>○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로 2-21호선(중점변경) · 소로 2-25호선 신설(B=8m, L=34m) · 경관녹지 10호 면적증가(10,090㎡ → 10,193㎡) -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-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37가구 7획지 허용용도 변경: 연립주택 → 다세대주택 <p>※ 원안 수용</p>	<p><심의> 도시개발정책팀</p>